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11. 27.

복지문화위원회

의안 번호	431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1. 04. 우종혁 의원 등 10인

나. 상정의결

- 제323회 강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2024. 11. 27.)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미래문화국장 : 문경수)

가. 제안이유

- 본 개정안은 강남구 독서 교육 기회 확대와 인프라 확충과 독서소외인의 독서 활동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독서 교육 정의 및 책무 (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3조제2항)
- 진흥사업 (안 제5조)
-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안 제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독서문화진흥법」
- 예산조치: 해당 없음
- 입법예고: 해당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I. 입법 필요성 및 배경

- 우종혁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독서 교육 기회 확대 및 인프라 확충, 독서소외인의 독서 활동 보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 사항은 “독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례 전반에 명시하려는 것임.
- 개정 필요성을 살펴보면, ▶독서 문화(「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 진흥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독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 ▶전 세대와 생애에 걸쳐 독서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이를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독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독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II. 주요 사항 검토

가. “독서 교육”에 관한 사항 명문화

- 본 개정안에서는 “독서 교육”을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독서를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안 제2조제2호)”라고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명과 목적, 정의, 책무, 기본계획, 진흥사업 등 조례 전반에 걸쳐 “독서 교육”을 명문화함.
- 이는 “독서 교육”을 독서 문화 진흥의 일부로 보지 않고 독립적인 정책 목표로서 그 방향을 제시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붙임 자료 참고)에서는 “독서 습관 형성 지원”을 추진 전략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부모 대상 독서 교육, 독서소외인의 독서습관 형성 지원을 위한 교육 등을 과제로 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나. 정의 및 책무(안 제2조 및 제3조)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핵심 용어 중 하나인 “독서 문화(제2호)”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이는 조례를 적용하고 해석 함에 있어 명확성 제고 등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임.
- 또한 “독서 문화(제1호)”와 “독서소외인(제3호)”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대해

「독서문화진흥법」상의 관련 규정을 인용한 것은 국가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의 통일성, 입법 경제성, 법률 개폐 시 적시 적용 등을 위한 입법 기술임으로 타당함.

- 안 제3조(책무)는 입법 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책무 규정을 둔 것임.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항에 “구청장은 구민이 균등한 독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독서 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음.

다.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4조)

- 안 제4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법」상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에 따라 강남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은 아니며 강남구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체 계획임.
- 개정안에서는 계획의 명칭을 “독서문화진흥종합계획”에서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관련 계획 명칭에도 “독서 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개정안의 취지를 명확히 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현행 “종합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변경한 것은 관계 법령상의 용어와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다만, 현행 조례가 2024. 3. 8. 제정·시행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이 올해 4월에 발표되긴 했지만, 현행 조례에 따른 우리구 종합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부의 관련 계획과 연계한 강남구만의 구체성이 담긴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라. 진흥사업 등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 실행 방안의 구체화(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현행 조례는 제5조(진흥사업 추진 및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서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비롯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사항을 정하고 있어 하나의 조에 여러 가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 제5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진흥사업), 안 제6조(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안 제7조(기관·단체와의 협력)로 세분화·구체화하였음. 이는 자치법규의 이해를 쉽게 하고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5조제1항제2호에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근거를 두면서, 안 제6조에 “구청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함.

- 독서소외인의 경우 신체적, 환경적,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비독자로 이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의 독서 활동의 기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관심이 요구되므로 별개 조문으로 뚝뚝으로써 정책 의지를 확인하고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다. 위원회 관련(안 제9조 및 제10조)

- 안 제9조 및 제10조의 위원회 관련 규정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명칭에 “독서 교육”을 명시하고,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임.
- 다만, 현행 조례에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강남구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둔다(현행 조례 제7조제1항)”고 되어 있음에도 해당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유, 향후 계획에 대한 부서의 설명이 요구됨.
- 참고로, 자치법규 개정 시 위원회 명칭이나 구성 요건이 변경 될 경우 부칙에 경과 조치 등을 두어 기존 위원회에 대한 과도적 조치가 필요하나, 현행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경과조치를 둘 필요는 없음.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개정안 부칙에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안 제9조제2항 및 안 제10조제3항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바 수정의 견은 다음과 같음.
 - ▶ 안 제9조제2항 “심의·자문 → 심의”로 수정
 - 표준국어대사전에 “자문”이라는 용어는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물음”으로 정의되어 있음. 즉, “자문”이란 의견을 묻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원회가 자문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 안 제10조제3항 “임명 또는 위촉 → 위촉”으로 수정
 - 해당 조항을 살펴보면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각 호의 규정된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위촉”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Ⅲ. 종합 의견

- 독서의 여러 유익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2013년에는 72.2%였으나 2023년에는 43.0%로 조사됨. 또한 우리사회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젊은 세대의 문해력 저하 문제 역시 독서 부족, 영상 위주의 콘텐츠 소비 등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이에 조례에 “독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정책의 내실을 기하고 독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431호

제안일자 : 2024.11.27.

제안자 : 복지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용어의 정확한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
- 위원회 구성 관련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2. 수정주요내용

- 조문의 용어 수정 (안 제9조제2항, 안 제10조제3항)
- 위원회 구성 정비 (안 제10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제2항 중 “중”을 “중에서”로, “담당 부서의 장”을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연직”을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으로, “독서 문화 진흥 업무 소관 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고,”를 “소관 국장으로 하고”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생략)</p> <p>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자문한다.</u></p> <p>1. ~ 6. (생략)</p>	<p>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원안과 같음)</p> <p>② ----- <u>심의한다.</u></p> <p>1. ~ 6. (원안과 같음)</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u>중</u>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u>담당 부서의 장</u>으로 한다.</p> <p>③ <u>당연직</u> 위원은 <u>독서 문화 진흥 업무 소관 국장, 담당 과장으로 하고</u>,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4. (생략)</p> <p>④ (생략)</p> <p><u><신설></u></p> <p>⑤ (생략)</p>	<p>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원안과 같음)</p> <p>② ----- <u>중에서</u> ----- ----- <u>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업무 소관 국장</u>----- -----</p> <p>③ <u>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 소관 국장으로 하고</u> ----- ----- <u>위촉한다.</u></p> <p>1. ~ 4. (원안과 같음)</p> <p>④ (원안과 같음)</p> <p>⑤ <u>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u></p> <p>⑥ (원안 제5항과 같음)</p>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문화 발전 및 독서 교육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독서 문화를 말한다.
2. “독서 교육”이란 책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고, 독서를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3. “독서소외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독서소외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이 균등한 독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도서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독서동아리, 지역서점(이하 “기관·단체”라 한다)은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운영과 연계방안
3.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서점의 운영과 연계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관·단체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진흥사업) 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활동 지원
 3.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
 4. 작가 초청 강연회 등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
 5. 올바른 독서 방법 등의 전파를 위한 독서 교육
 6.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 독서 문화 축제, 포럼 등 독서 관련 행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구청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국민에게 다양한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제공을 위하여 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 생활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
2. 기관·단체의 독서 문화 공간에서의 독서동아리 활동 지원

3. 기관·단체 간 협력 방안 및 네트워크 구축

제8조(독서의 달)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국민의 독서 의욕 고취와 독서 생활화 등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에 기념행사와 관련 프로그램을 개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2. 진흥사업의 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3.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협력에 관한 사항
4.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관련 모범사례의 수집 및 보급
5.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교육·출판·도서관·문화계·독서지도·언론계 등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에 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3.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 도서관장
 4. 그 밖의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에 관심이 많은 지역 인사
-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독서 문화 및 독서 교육 진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